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과제

전창훈*

- Ⅰ.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필요성
- Ⅱ. 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현황 Ⅳ. 결론: 발달장애인 신탁의 과제
- Ⅲ. 발달장애인 신탁의 유형과 사례

------[요약] ------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산 갈취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으면 이러한 현실은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막는 요인이 된다. 본 논문 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발달장애인 신탁제도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방안 으로 특별수요신탁제도와 공적 신탁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정신장애인, 인권, 회복 중심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사업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 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생 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재산 갈취 등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뉴스나 신문 등을 통 해서 종종 접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하여 발달장애인들을 지역사회와는 고립된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발달장애인 역시 비장애인들과

^{*} 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함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때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더 나은 사회적 배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사회는 발달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고 나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탁의사결정지원 센터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을 시작하였다. 신탁은 발달장애 인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유용한 재산관리방법이 될 수 있으 며 이미 미국, 영국, 호주 같은 서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재산 갈취의 위험으로부터 발달장애인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보호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물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후견인도 발달장애인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사무 등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공무원 결격사유, 선거권 제한, 자격취득 제한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많은 제약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¹⁾. 따라서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의 한계와 후견제도의 보충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와는 별개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로 재산관리사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서도 신탁을 활용한고령자와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¹⁾ 우리나라에는 현재 300여개의 법률에서 350개의 결격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격 조항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기반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실효성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전면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제철웅,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전면폐지', 2018. 4. 6. 국회입법조사처,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자료집 32면 이하

11. 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현황

1.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경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부모 등이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에게 재산 을 이전하고 수익자로 장애인을 지정하여 그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신탁계 약을 통해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고. 부모의 사망 등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개별적인 수요를 고려한 이 른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현재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발달장애 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신탁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있다. 이를 제외 하면 현재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사업으로는 한 국자폐인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이 유일하다?). 또한 최근에는 후견제 도의 도입으로 인해 친족후견인 등 후견인의 재산적 배임행위로부터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후겨지워신탁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 는 실정이다.

1)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3)에서 정한 장애인에

^{2) 2018. 4.}부터 서울복지재단에서는 하나은행과 함께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를 위해서 신탁사업을 시작하였다. 다만, 위 사업은 서울복지재단에서 직접 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사무국의 동의하에 재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하는 신탁사업과는 차이가 있 다. 관련기사 2018. 4. 25. '신탁제도 활용해 장애인 통장 지킨다' 연합뉴스

³⁾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 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 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사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4).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부모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발달장애인에게 5억 원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고 이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으로맡기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탁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가정으로 5억 원 정도의 신탁재산을 맡길 수 있는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의 개정으로 의료비 등의 부득 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 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 오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⑥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⁴⁾ 금융투자협회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건(수탁금액 92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하나은행·신한은행을 비롯해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 엔에이치 (NH)투자증권·신영증권 등 이 상품을 취급하는 7개 은행·보험·증권사의 모든 실적을 합한 수치다. 2016. 6. 8. '이름값 못하는 장애인부양신탁', 한겨레신문https://goo.gl/W2uZoR

로는 원본을 사용할 수 없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만이 가능하다. 그러 나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금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보면 이러한 수익금 을 장애인의 일상생활상의 욕구나 수요를 충족할 물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 조달 이라는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담당하지는 못하여 그 수익이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2) 후견지원신탁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후견인이 수행하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사무 를 신탁제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사건이 급증으로 법원의 후격인 감독업무가 증가하고 후견인에 의한 부정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한국 역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년후견지원 신탁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다5).

후견지원신탁이은 본인(피후견인)의 금전재산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성년후격인이 관리하고. 나머지 재산을 신탁은행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관리하는 것이다. 통상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어 일정기간 후견사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한 사무를 토대로 하여 본인의 재산상황 및 일상생활상의 수요를 파악한 후, 적정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계약체결 이후 전문직 후견인은 사임하고 친 족 등이 후견인이 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비용 등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지시서를 받아 신탁은행에 제출함으로서 신탁재산 을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⁵⁾ 하나은행에서는 2017년 1월 성년후견지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608743/?sc=naver

⁶⁾ 이하의 후견지원신탁에 대한 내용은 배인구,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 탁제도, 2017. 3. 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년후견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자료집, 21면 이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후견지원신탁은 신상과 관련된 사무를 친족후견인이 잘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재산관리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당사자의 일상생활상의 욕구가 잘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족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친족후견인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전문가 후견인이 계속 선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없다. 특히 후견지원신탁은 재산의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로 피후견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고 재산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있다. 통상의 경우 친족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상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 피후견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반영되지 않는 통상의 수준에서의 재산사용 및 관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지원신탁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발달장애인 신탁사업

현재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는 민사신탁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은 신탁의 특성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의 취향, 욕구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 랑협회가 부모님 또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협회가 수탁자가 되어수익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신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의 경제적 기반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사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사신탁을 활용한 사인간의 신탁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로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신탁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탁을 영리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위 신탁사업에서는 신탁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이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이 앞서 언급한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과 가지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위 사업에서는 신탁재산을 유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 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액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를 보관하고 신탁재산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수요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안전환 관리를 넘어 사회복지적 관점 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적시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신탁은 개별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 므로 그 과정에서 부모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신탁의사 결정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지원계획과 이에 근거한 발달장 애인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복지 분야 종사 공무원, 사회복지학 및 법학 교수, 회계사, 변호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등이 참 여한 신탁관리위원회를 통해 개별 사례 및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과 감독을 받음 으로서 발달장애인 신탁이 당사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 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Ⅲ. 발달장애인 신탁의 유형과 사례

1. 발달장애인 신탁의 유형

발달장애인 신탁은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상과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이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신탁의 이용사례를 이용대상, 이 용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1)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은 현재는 부모님의 지원 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향후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이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직업활동을 통해 자립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얻는 것은 매우 희박하므로, 향후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나 공적부조에 의존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자녀를 위한 최적의 지지자가 있다는 점이다.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 성향, 기호, 의료정보 등 개별적 특성을 비교적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향후 발달장애인이 의사, 욕구를 반영할 때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희망, 욕구에 따른 삶의 전반을계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 능력배양, 단기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부모님을 통해 가능한 시기이다. 특히 노년기의 부모님의 경우 부모님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임박하였으므로 신탁을 활용한 자녀의 자립기반을 설계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2) 돌볼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에 의한 재산 갈취에 대한 위험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금전개념이나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여 이러한 재산 갈취를 당하는 경우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재산적 피해의 양상을 살펴보면 재산적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인지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그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적당한 지원자나 조력자 없이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전적인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 신탁의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에는 향후 자녀가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계획하기도 한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 명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토대나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 부모 님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선택이다. 현재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가로 부터 장애인연금 등의 공적부조를 받게 되어 매월 소정의 연금이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또 일부 장애인들은 근로활동을 통해 소정의 급여를 받기도 하 고, 부모님이나 친척이 금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설에 생활하는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금전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재산은 통상 해당시설에서 관리를 해주는 경 우가 많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감독하기 위해 적지 않은 행정비용 을 소모하기도 한다. 비단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사 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발생한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해당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그 관리권한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 서 이러한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을 줄이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재산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법적토 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신탁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 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관계가 명확히 규정된다면 이를 관리하는 시설의 관 계자의 입장에서도 그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2. 발달장애인 신탁계약 체결 현황⁷⁾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 6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는 총 7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탁을 활용한 재정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 중 59명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 계약기간 만료(7명) 및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해지(2명)로 총 9명이 신탁계약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신탁계약 종료는 부모님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 유형에서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가 된 신탁계약 모두 1차 년도 사업 초기에 체결된 신탁계약으로 새로운 지원체계인 신탁을 시범적으로 이용해보려는 욕구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부모에 의한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신탁을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가구적 특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8).

구분	대상	진행중	중단	체결	이용중	종료	
下 正	선정	신생궁	중간	세글		해지	만료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	27	1	0	26	17	2	7
돌볼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33	3	3	27	27	0	0
거주시설 장애인을 위한 신탁	10	0	4	6	6	0	0
계	70	4	7	59	50	2	7

〈표 1〉 발달장애인 신탁 계약체결 현황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신탁사업을 처음 시작한 1차년도 초기에는 발달장 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신탁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으며, 발달 장애인이 신탁을 직접 이용하는 다른 유형의 신탁계약의 체결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2차 년도부터는 지역사회에 보호자 없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⁷⁾ 이하의 내용은 2018. 6. 14. 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18년 발달장애인 신탁사업 성과 보고회' 자료집의 해당부분을 발췌한 것임.

⁸⁾ 신탁계약자 인터뷰에서는 '현재의 사업은 신탁재산을 발달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지원서비스를 수탁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부모님이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시기에는 신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나 시설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이용빈도 및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매년 발달장애인 신탁을 홍보를 하는 방법 및 사례를 연계하는 지원기관이 확대된 결 과이다. 1차년도에는 본 협회의 회원이나 주변인을 중심으로 홍보 및 계약체결 이 진행되었다면, 2차년도 이후에는 지역 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 익옹호기관 등에 홍보하여 해당기관들과 연계하여 개별 사례를 지원하는 경우들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 년도에만 21건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지원 사례들이 수집되었고 이들 중 재산 갈취 등의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원기관을 통해서 연계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면 ①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으로 재산 갈취 등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 ②이미 재산 갈취 등 피해를 입은 바 있으나 공공후견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비교적 우수하며, 주변의 지원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후견제도의 보충성을 기본원칙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노력을 한 사례들로서 판단된다.

		신탁유형		
구분	부모가	돌볼 가족이 없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합계
	관리하는 신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신탁	
 1차년도	11	0	1	12
2차년도	15	5	4	23

21

2

24

3차년도

〈표 2〉 사업연도별 신탁계약 체결 내역

이하의 월별 신탁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3차년도 이후에는 매월 2-3건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담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1, 2차 년도에는 12월과 1월에는 연계기관들이 대부분 사업을 정리하거나 계획하는 기 간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되어 상담신청 및 계약체결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3차 년도부터는 이러한 시기적 특성 없이 지속적인 상담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서 직접적

12 「후견과 신탁」제1권 제2호

인 사례연계 이외에도 본 사업에 대한 정보가 일선 사회복지현장과 부모님들께 지속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 월별 신탁계약체결 현황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5년										3	8		11
10년							<		1 <i>5</i>	하년도			11
'16년					2	1	2		1		1		7
10년	2차년도) 〈2차년도						/						
1713	1	2		14		2		3		4	2	1	20
'17년			2차l	<u> </u>		>	<		3 <i>5</i>				29
10I=	2	2	2	3	3								10
'18년		3	차년도-		>								12

현재까지 체결된 신탁계약의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여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이용자가 50%로 전체 이용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방의 경우에는 부산지역에서 17건으로 비교적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의 경우에도 많은 신탁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서 신탁서비스 수요자가 연계된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는 점차 각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서비스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에 활용하거나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⁹⁾ 한편 현실적으로는 적합한 후견인후보자를 물색하기 힘들어, 재산관리는 신탁을 활용하고, 주변인 및 ,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의 신상관리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표 4〉 지역별 신탁계약 체결현황

(단위:명.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합계
이용자	11	7	7	1	2	2	1	1	17	1	50
비율	22	14	14	2	4	4	2	2	34	2	100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의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면 자폐성장애는 불과 4% 정도에 불과하고, 지적장애의 경우가 전체 88%에 이르는 결과를보여 다수의 이용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사업초기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기간만료로 해지된 부모님이 위탁자가 된 사례의 경우에는 전원이 자폐성장애였다. 기타 정신장애 및 미등록 장애인도 8%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탁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유형의 장애이나 정신장애 및치매 등보다 더 다양한 의사결정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탁서비스의 제공 및 수요자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치매노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이 정착되면 신탁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5〉 장애유형별 이용자현황

(단위:명, %)

구분	자폐성 1급	지적장애 1급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경계성 (미등록)	합계
이용자(명)	2	4	9	31	2	2	50
비율(%)	4	8	18	62	4	4	100

신탁을 이용하는 목적은 주로 재산보호 및 일상생활비, 프로그램 이용 등의 목적이 많았다. 부모가 체결하는 신탁의 경우 주로 프로그램이용 목적이 대부분 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신탁의 이용의 경험을 얻기 위하여 평소 지출되는 발달장애인의 프로그램 이용료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신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은 당장 발달장애인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

14 「후견과 신탁」제1권 제2호

공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부모님들의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미래위한 재정적 준비를 시작하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에 의한 재산보호 그리고 일상생활비 관리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유형은 발달장애인의 현실에서 직면한 재산의 보호 및 이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의사결정지원을 신탁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신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 미래계획을 위한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계획 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신탁이용목적

(단위:명, %)

지역	재산보호	의료비	일상생활비 관리	프로그램 이용	합계
이용자	15	2	16	17	50
비율	30	4	32	34	100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의 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용자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차 년도에는 지역 복지관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2차년도 이후에는 발 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연계하였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모님,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신탁에 대한 정보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표 7〉 발달장애인 신탁 연계기관

(단위:명. %)

구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 호기관	장애인복지관 / IL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지자체	개인	합계
이용자	8	9	24	4	2	3	50
비율	16	18	48	8	4	6	100

3. 발달장애인 신탁의 사례

1) 홀로 남겨질 자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신탁

사례 1.

A양(36세, 여성)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A양은 고등학교를졸업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였고 최근에는 지역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A양의 부모님은 그들의 자녀가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양의 부모님은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사후에도 A양이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A양을 위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사후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적당한 후견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 A양에게는 한명의 오빠가 있지만 A양의 부모님들은 오빠가 A양의 재산을 관리하고 후견인의 역할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산의 일부를 A양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도고민을 가지고 있다.

(1) 계획수립하기

위 사례에서 A양의 부모님은 우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 및 재정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렇게 수립된 실행을 위한 재산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A양의 의사결정을 조력해줄 수 있는 지원자 또는 후견인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민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계약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①초기상담, ②전문가상담(사례회의), ③개인 별 평생계획수립, ④점검 및 수정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당사자 및 부모님의 욕구가 충분히 도출이 되면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계약의 내용이 설계되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설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이를 위한 재정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체결된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수탁자가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관리하게 된다. 수탁자는 이러한 신탁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및 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신탁재산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탁자가 도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되지 못하므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탁자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면 보다 더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이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지원자가 필수적이다. 여기서의 지원자는 민법상의 후견인과는 달리 일정한 법적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인 수익자의 의사결정을 조력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익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배분금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수탁자에게 부담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탁자는 지원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신탁재산이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2) 신탁계약의 내용

A양의 부모님은 매월 18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는 A양에게 이를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신탁을 통하게 되면 부모님의 생전에는 부모님이 직접 관리하고 사후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A양의 일상생활비용에

대해서 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어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A양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적립하여 향후 일상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 및 여가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를 처분하고 다 른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속적인 임대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A양의 부모님 사후에는 오빠가 지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생 활비용 중 그룹홈 비용, 활동보조인 비용과 같은 정기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그 용도가 확인되면 수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직접 지 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자의 사무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수반되는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위임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을 통해 신 탁재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신탁재산의 사용과 관리는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목적과 방식에 따르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신탁계약은 계약체결 준비단계에서 수립된 평생 계획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에게 일정한 재량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수익자인 당사자가 생활하는 환경과 여 건,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사전에 반영하여 계약을 설계한다는 것을 어렵기 때 문이다. 물론 수탁자는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최대 한 부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A양을 위한 신탁계약 역시 일정액 이상 신탁재산 의 처분이 있거나 신탁계약의 목적사항, 지원자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가 운영하는 신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의적인 신탁재산의 처 분이나 관리를 막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지원자, 친족 기 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사무 및 재산관리사무를 후원하기 위해 후견인 을 선임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재산관리 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후견 인의 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보수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충실한 후견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신탁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육전문가, 발달장애 인의 부모 등의 자문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상대적으로 저렴

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양은 의사소통능력 및 일상생활능력이 비교적 우수하여 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자,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법적권한을 가진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후견실무에서도 재산관리를 위한 후견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을 통해 재산관리의 부분이 해결된다면 후견개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이후 A양에게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및 대리가 필요가 발생한다면 그때 후견을 개시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며, 후견인이 선임된다고하여도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전적으로 후견인의 관리 하에 맡기는 것보다는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한 재산관리 방법이 될 것이다.

2)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사례 1.

B씨(64세, 남성)는 서해안 도서지역의 염전들에서 30년 동안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염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B씨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는 않았으나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채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구제, 재산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원은 B씨에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을 통해 피해구제 사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하였고 B씨는 우선 약 2천만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B씨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우연히 알게 된 박모씨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으며, 본인명의로 3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약 300만원 상당의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사례 2.

C양(32세, 여성)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가 C 양을 양육하였으나 5년전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

게 되었다. C양에게는 남동생이 한명 있으나 남동생은 C양과의 교류를 원하 지 않는 상황이다. C양은 아버지 사망 이후 가출청소년들로 구성된 소위 '가 출팸'에 들어가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이들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성매 매를 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C양을 강박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약 3천만원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현재 C양은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도움 을 받아 성매매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C양은 그간 근로활 동을 통해 약 2천만원의 재산을 모았으나 최근 친한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 이들에게 식사와 술을 사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C양에게는 아 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다.

사례 3.

D군(36세, 남성)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생활하며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다. D군은 자립생활센터의 교사와 동거하는 장애인 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D군은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 고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2천만을 모았다. 4년 뒤 D군 은 자립생활센터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D군은 직장 동료의 꾀임에 빠져 성매매업소에 출입하게 되었고. 그간 힘들게 모은 2천만원의 자립준비자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다. 생활교 사는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염려하여 가까운 은행에 D군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연락을 달라고 당부를 하였으나 D군은 다른 지역의 은행을 찾아가 돈을 인출한 것이였다. D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으나. 피해구제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D군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

(1) 계획수립하기

위 사례들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갈취 등의 재산적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발 달장애인은 타인이 위력을 가하는 경우 이에 저항하여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아 그 피해가 반복적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휴대폰,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바는 경우 이러한 채무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다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의 재산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하기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재산적인 피해를입기 전에 신속하게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재산피해의 사전적으로 예방수단으로서 신탁의 효용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신탁계약의 내용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위 사례들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신탁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신탁재산으로 맡길 수 있는 재산 의 규모가 한정적이고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 약조건 하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수급비 및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주거수선 및 환경개선 등의 비정기적인 생활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자립준비금 등 특별한 지출이 발 생하는 경우에만 신탁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설계한다. 물론 당사자가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나 정기적인 소득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일상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사례들의 경우에서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금전개념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상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상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금전관리능력, 생활비의 지출패턴 등을 고려하여 2주에서 1개월 주기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후견인 등이 지원자로 지정되어 이들의 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비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역할을 수

행하는 후견인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제출한 뒤 예상 견적을 통고하면 이를 지급할 것이다. 이후 진료 및 치료가 완결되면 수탁자는 실제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신탁재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위 사례의 D군과 같이 주거마련을 위한 저축이 필요하다면 신탁을 통해서 이를 모으는 것이 안전하다. 신탁을 통해 맡겨진 자립준비금은 중도에 D군이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싶어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4년 후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주거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수탁자가 이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다른 긴급한 사유로 목적 외의 재산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또는 수익자가 요청시 수탁자는 신탁관리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신탁계약의 목적을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맡겨진 신탁재산은 B씨와 C양의 사례처럼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휴대폰 개설, 대출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사해목적의 신탁이 아닌 이상 채권자들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집행을 할 수 없어 안전하게 보호될수 있다.

사례 4.

지적장애인 F씨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비장애인 아들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F씨는 같은 건물에 생활하고 있는 이웃주민 G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고 수년 동안 G씨는 F씨의 육아,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중 G씨는 F씨를 기망하여 소액의 금전을 편취하기 시작하였고 3년 전 급기야 F씨가 질병으로인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편취하였다. 당시 F씨는 주변의 도움으로피해금 중 2천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음으로 지급받은 상황이다. 이후 3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G씨는아직까지 어음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 계획수립하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에 의한 금전의 편취 등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적절한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만약 발달장애인의 재산이 신탁을 통해 수탁자에게 맡겨지면 수탁자는 신탁 재산의 소유자로서 소송행위를 포함하여 적당한 재산관리행위를 수탁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 신탁재산으로 맡긴다면 수탁자는 그 채권을 추심, 변제받거나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탁을 통해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2) 신탁계약의 내용

F씨와 초기상담과정에서 어음이 있다는 사실이 담당 변호사에게 보고된 시점에서 위 어음은 소멸시효 완성까지 1달이 남아 있었다. 만약 사례관리자가 이사실을 1달 뒤에 알았다면 F씨는 1천만원의 어음금채무를 지급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탁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어음발행인과 면담을 하여 변제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 변제자력이 없으므로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탁자는 채무자의 변제의지와 계획을 확인하고 3개월 지급청구할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어음을 발행받았다. 3개월 후 어음발행인은 약속한 변제계획대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6개월 뒤 남은 금액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신탁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신탁재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있다. 사례와 같이 채권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장애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절히 종료시키고 더 나은 조건의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탁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업무들에 대하여는 관리비용이외에 별도의 부담이 없어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사례 1.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H양(22세, 여성)은 어릴 적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어머니와 떨어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 다. 시설의 종사자들은 H양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 것에 대해 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가급적 본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 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H양은 현재 인근 고등학교에서 행정보 조일을 하며 매월 일정한 수입을 얻고 1천만원 정도의 저축도 하였다. 하지 만 과거 H양의 부모들은 H양이 저축한 돈을 가져간 바가 있다.

(1) 계획수립하기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거주시설에서 거주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통장관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적법 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시설 에서 거주자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관리, 감독에 많은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재산을 부모 또는 가까운 친족이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시설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재산관리를 위해 신탁을 활 용한다면 현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발달장 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재산관리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자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안전 한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 실질적인 관리자의 권한 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시 설종사자들의 책임의 범위와 한계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2) 신탁계약의 내용

처음 상담을 위해 거주시설에서 만난 K양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된다면 자립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지원자가 되어야 K양의 부모들이 K의 재산을 가져가는 상황이었다. 시설종사자들 역시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 지위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였다. K양이 어렵게 모으는 재산이 향후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신탁계약을 통해 부모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재산을 안전히 보호하고 향후 자립을 위한 주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목적을 설정하였다. 향후 K양의부모, 친인척 또는 제3자가 신탁계약상의 목적이외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 만약 처음 신탁계약에서 설정한목적 이외에 다른 긴요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신탁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외 사용을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지원자는 신탁관리위원회에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발달장애인 신탁의 과제

1. 발달장애인 신탁의 개선방향

지금까지 한국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지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방안으로 신탁의 활용가능성과 그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유일하게 제도화 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부양신탁은 최근 일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현재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 역시 신탁제도에 대한 토대가 영미법계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법문화적 토대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서도 3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

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설계의 바람직 한 방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접근에서 시 작되어야 한다10).

첫째,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생소한 상황이다. 이는 이러 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의 지원이 부재하며, 재산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 전문가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계획 에 대한 부재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불안과 염려를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미래계획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는 부모와 가족들이 오롯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과 함께 돌봄의 연속성이 붕괴되어 발달장애인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공적제도인 후견제도와 사적 금융제도의 서비스 등이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일상생활의 지원. 돌봄의 연속적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고 인식한다.

넷째, 제도의 지원의 내용으로는 국가의 기본생활보장, 포괄적 계획, 공공성, 돌봄 관리체계, 재원 확보, 양질의 지원자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재정계획의 중요요소로서 재정계획과 관리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 의 차등 없이 제공되어야 하나 비용은 차등적용 되어야 하고, 부모의 노후에 대 한 계획 역시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한 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걱정과 염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는 ①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지원계 획의 수립절차. ②이러한 계획에 바탕을 둔 신탁서비스의 제공과 공적운영기관. ③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안정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지원자(서비스)의 원활한 연 계. ④발달장애인의 기본적 수요에 대한 공적부조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방향성에 입각하여 필요한 현재 한국의 장애인신탁제도의 개선방향

¹⁰⁾ 이하의 내용은「신탁을 활용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재정·재산관리 운 영 방안 연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17, 6, 119면 이하의 성인기발달장애인 부모. 집단과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임.

및 설계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2.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현재 영미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는 공적부조에 의한 생계급여, 장애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발달장애의 특성상 필요한 의료적 처지, 지원서비스 등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재원을 신탁을 통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일정한 정도의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공적부조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소정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결국 발달장애인은 경제적으로는 공적지원에 의존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의 요구는 정부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나 결국은 재정상의 한계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요신탁은 장애인이 자기 재산을 신탁의 형태로 보유하더라도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에서 수급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¹¹⁾. 이렇게 함으로서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적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공적재원과 사적재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발달장애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공적부조가 제공하는 수준의 삶의 질을 넘어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공적 신탁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모님의 사적 재산을 출연하는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공적 운영체

¹¹⁾ 특별수요신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철웅, 최윤영, 중증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비교사법 21권 3호(통권 66호), 1139-1184 참조

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신탁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그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장애인부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충실한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폴이 특별수요신탁회사를 설립하여 특별수요신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신탁이용료 역시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서비스 제공기관설립 또는 지원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에서 시행이 되어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신탁서비스를 보다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제공지원기관의 설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화,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공적 신탁기관은 단순한 재산의 관리 및 집행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정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의 노후계획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한다.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되는 형식의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재정관리, 사회복지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자산을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양질의 신탁재산관리를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자인 발달장애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조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적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금융기관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그 이용이 답보상태에 있는 장애인특별부양신탁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 및 증여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22# 0000
- '이름값 못하는 장애인부양신탁', 한겨레신문, 2018.6.8.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47456.html
- 'KEB하나은행,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금융권 최초', 데일리안, 2017.1.25, http://www.dailian.co.kr/news/view/608743/?sc=naver
- 배인구,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탁제도,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 포지엄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집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18. 2018년 발달장애인 신탁사업 성과보고회 자료집

[Abstract]

Status and Tasks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Trusts System in Korea

Jeon, Changhun Autism Society of Korea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ffer exploitation or financial abuse in community and these cause a factor preventing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the progress and the status of the trusts system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as a system protecting economic capacity and supporting economic use based on self-determination. And it was suggested enforcement of special needs trusts system and establishment of public trusts services institution.

■ Keywords: trusts system, special needs trusts System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public trusts services institution